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도시관리국)

의안번호	제183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이선하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제87조의31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2)

- 1) 「건축법」 제87조의3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 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   2.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    3.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    4.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    5. 그 밖의 수입금
  -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    1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
    2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
    3.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·연구비
    4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    5.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대상 (2023.8.17.~9.6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

---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